

# 【 11 】 양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

## 전부개정 조례안

의 안	
번 호	

제출연월일 : 2009. 3. .  
제출자 : 양주시장

### □ 개정이유

-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를 대상으로 농기계를 임대하여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과 농기계 이용 효율 극대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이 일반회계와 중복되고 2007년 임대료 50% 징수에서 30%로 하향 조정되어 사업의 재투자가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기금운영성과분석결과 기금폐지도록 권고되어 일반회계와 통합 운영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### □ 주요골자

- 제3장 농기계임대사업 기금설치 및 운용 규정 폐지(안 제18조 ~ 제25조)
- 본칙을 제1장에서 제3장까지로 구분했던 것을 조문형식으로 개정

양주시 조례 제 호

## 양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

양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 양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농기계이용률 제고 및 농가부담 경감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양주시농기계임대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임대기종)** 이 조례에서 정한 임대농기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트랙터, 콤바인, 이앙기 및 부속작업기
2. 축산 및 과수분야 농기계
3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기계류

**제3조(임대대상자)** ① 농기계임대대상자는 양주시(이하 "시"라 한다)에 소재하는 공동이용조직으로 한다.

② 제1항에서 말하는 공동이용조직이라함은 지역농협, 축협,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작목반 등을 말한다.

**제4조(임대절차 및 선정)** ① 농기계를 임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등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주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양주시농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

거쳐 임대 대상자를 선정한다.

**제5조(임대계약)** 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임대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시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농기계 임·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 
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임·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계약서 상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**제6조(임대기간)** 임대차계약기간은 1년단위를 원칙으로 하되, 유지·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내구년수 까지 연장한다.

**제7조(임대료 등)** ① 농기계임대료는 농기계가격, 내구년수, 지역의 임대료, 임금, 물가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.  
 ② 임차인이 농가의 영농을 대행할 때에는 지역 임대료 및 영농대행료를 기준으로 하여 농가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적정 영농대행료를 받아야 한다.

**제8조(임작업 대상농가 선정)** 임차인은 임작업 대상 농가 선정시 사업취지에 맞게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지원하여야 한다.

1. 농지규모 1㏊미만의 고령자, 부녀자, 영세농가
2. 자연재해 등으로 농작업이 어려운 조건 불리지역 재배 농가
3. 시장이 영농여건상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농가

**제9조(양도 및 대여 금지)** 임차인은 임대농기계를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. 단, 효율적인 농기계 관리를 위하여 지역농협은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재임대가 가능하다.

**제10조(임대농기계의 관리)** ①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임대농기계 보유현황 및 임대료 수납 대장을 기록·유지하여야 한다.

② 임차인은 농기계관리대장을 작성·비치하고 시장의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.

**제11조(안전관리)** 임차인은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1. 계약체결전 농기계종합공제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
2. 운전요원 및 보조요원에 대해서는 농작업상해공제 등 안전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.
3. 농기계는 도난방지 등을 위해 안전한 장소에 보관·관리한다.
4. 임대농기계는 기계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수리요원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·정비하여야 한다.

**제12조(관리·감독)** 시장은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관리·감독의 권한을 가지고 효율적인 관리·감독을 위해 임차인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1. 농기계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2. 임대농기계관리대장 및 임작업관리대장
3. 사업결산내역서
4. 기타 시장이 관리·감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일체

**제13조(계약의 해지)**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에 위반한 때
  2. 재해복구 또는 공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
  3. 기타 기계류의 관리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
- ② 제1항제1호 규정에 의거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정비하여 반환하여야 한다.

**제14조(임대료 감면)**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

1. 제13조제1항제2호에 해당될 때
2. 임대기간 중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특별히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

**제15조(기계의 반환)** ① 임차인은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자체없이 정비하여 반환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에 의거 임대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고장유무를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내구년수가 지난 농기계는 임차인이 원활 경우 관내 농기계 전문가 2인 이상의 감정을 받아 임차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.

**제16조(운영경비 부담)** 임차인은 임차기간 중 그 사용에 소요되는 경비 일체를 부담하여야 한다.

**제17조(변상책임)** 임차인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농기계가 분실 및 훼손되었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. 다만 천재지변등으로 인한 분실 및 훼손 시에는 변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**제18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실·과·소		농축산과
입 안 자	실·과·소장 직위·성명	농축산과장 이태연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농산팀장 박양식
	담당자 성명·전화번호	김영돈(820-5585)